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39호

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, 다동,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91호(2023.0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4호(2023.09.21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-30호(2024.05.16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된, 우리 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19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사업의 명칭 :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
- 2)면 적 : 2,191.3㎡ [정비기반시설(도로, 공원) : 254.8㎡]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성 명 : 이든센트럴 주식회사 (대표 조광욱)
- 2)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, 비동 410호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4. 06. 19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
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층수 (지상/지하)	주용도	비고
958.17	30,076.28	49.48	1,048.57	119.8	27/7	업무	

아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	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	
종류	관리청	규모 (㎡)	종류	관리청	규모 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-	-	-	공원	중구	62.8	이든센트럴 주식회사	사업시행자 설치, 관리청에 무상귀속
-	-	-	도로	중구	192.0		
계					254.8		

자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(☎ 3396-5774)에 비치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

구분	연번	권리소재지	토지				건 축 물			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			
			지목	면적(㎡)		이용상황	용도지역 또는 지구	소유자		용도 / 구조	동수 / 층수	연면적	소유자			권리의 종류	권리자	
				공부상	편입			성명	주소				성명	주소			성명	주소
	계		2,221.30	2,191.30							17,374.37							
수용 / 사용	1	을지로1가 42번지	대지	1,936.50	1,730.00	일반 상업	(주)무궁화신탁 (이튼센트럴㈜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업무시설/ 철골철근	1/12	17,036.69	(주)무궁화신탁 (이튼센트럴㈜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				
		206.50		서울특별시			서울특별시											
	2	다동 51~9번지	대지	62.80	62.80	일반 상업	(주)무궁화신탁 (이튼센트럴㈜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									
	3	다동 53~8번지	대지	222.00	192.00	일반 상업	(주)무궁화신탁 (이튼센트럴㈜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제2종근생/일반 철골	1/2	337.68	(주)무궁화신탁 (이튼센트럴㈜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				

제3101호 57-34

2024. 6. 19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627호

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정비구역·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.)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(1982.08.1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06.14.)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346호(2024.03.25.)로 주민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5.29.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정비구역·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공람창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I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경	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남대문로4가 20-10번지 일대	68,852.5	증) 4,983.0	73,835.5	건설부고시 제123호 ('77.6.29)

■ 정비구역 지정(변경)사유서

구분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○ 남대문 정비구역 면적변경 : 68,852.5㎡ → 73,835.5㎡	○ 노후된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(신세계백화점 본관 앞)을 향후 정비사업과 연계한 보행면의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확대